문경관광진향공단 업무추진비 세부지침 중 일부 개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 2020. 08. 21.

문경관광진흉공단이사장

문경관광진흥공단 내규 제51호

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추진비 세부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추진비 세부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7.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
 - 가.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·다과재료의 구입
 - 나. 축의·부의금품
 - 1) 지급대상 범위: 결혼 또는 사망
 - 2) 지급 대상자: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 - 3)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
 - 가) 공단 임직원
 - 나)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
 - 다)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1 ~ 6(생 략)	제3조(적용범위) 1 ~ 6(현행과 같음)
7.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	7
가.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・다과	가
재료의 구입	
나. 축의 • 부의금품	나
1) 지급대상 범위: 공단 임직원의 결	1) 지급대상 범위: 결혼 또는 사망
혼 또는 사망	
2) 지급 대상자: 대상자 본인과 배우	2)
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	
<신설>	3)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
	<u>가) 공단 임직원</u>
	나)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
	다)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 유관기
	관의 임직원